

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

□ 제도 개요

- 지원대상 :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, 조합원사 및 중소기업
-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구매력 강화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용보증제도 도입
 - 전용보증을 통해 대금지급을 보장(중소기업→협동조합)하고 현금결제(협동조합→판매사)를 통한 단가 인하 유도
- 보증규모 : '20년 1,320억원
- 운영기관 : 중앙회·협동조합(참여기업 추천), 신보·기보(보증지원), 기업은행(구매자금 지원), (주)이상네트웍스(업무수탁 수행)
*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관) 7월 신규참여

□ 전용보증 성격

◆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

- ①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
-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금(신보, 기보, 신보중앙회)에 출연하고
- ③ 보증기금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

○ 전용보증 차별성

- (일반보증) 보증담보 대출을 통해 대출금 자유롭게 활용
- (전용보증)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에만 결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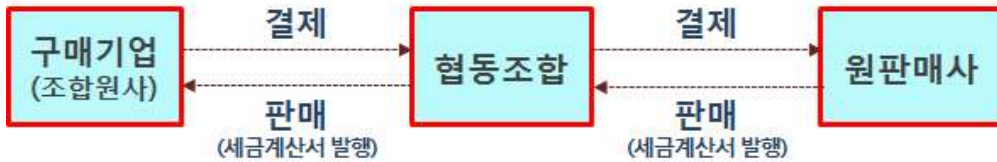
○ 전용보증 우대사항

- (신보/기보) 보증수수료 $\Delta 0.5\%p$ 차감 및 보증비율 95%(5년간)
- (기업은행) 은행금리 최대 $\Delta 2.0\%p^*$ 차감 및 수수료 면제(5년간)

* 기본 $\Delta 1.0\%p$ + 기업별 추가 $\Delta 1.0\%p$

□ 보증 활용 프로세스 * 2개 방식 중 택일

① 협동조합 거래중개 방식



- 구매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한 물품(원·부자재) 구매 후 결제 시 기업은행 자금활용 (기업은행 → 조합 → 원판매사)
 - * 조합은 원판매사에 구매물량 확대 및 현금 즉시결제를 통해 단가인하 요청
 - * 기업은행→조합 결제는 구매카드 방식(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)으로 은행에 할인(할인수수료 발생) 후 현금으로 원판매사 지급
- 구매기업은 만기일(최대 180일)에 기업은행에 대금상환 후 한도 복원 및 공동구매 활용(회전성 상품)
 - * 구매기업이 기업은행 대금 미상환 시 보증기관이 기업은행에 대위변제

② 협동조합 거래승인 방식



- 구매기업은 협동조합 승인을 통한 물품(원·부자재) 구매 후 결제 시 기업은행 자금활용 (기업은행 → 원판매사)
 - * 공동구매에 따른 조합 수수료는 조합원사 및 조합간 별도 정산
 - * 원판매사 결제는 구매카드 방식(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)으로 원판매사는 은행 할인(할인수수료 발생) 후 현금화 혹은 기한 후 수수료 없이 현금화 가능
- 구매기업은 만기일(최대 180일)에 기업은행에 대금상환 후 한도 복원 및 공동구매 활용(회전성 상품)
 - * 구매기업이 기업은행 대금 미상환 시 보증기관이 기업은행에 대위변제

□ 참여신청 안내

<참가신청>	<보증추천>	<보증발급>	<약정체결>	<공동구매>
협동조합	중앙회	보증기관	참여기업	협동조합 참여기업
참여희망 조합원사 모집	보증기관(신보, 기보) 추천	보증심사 및 발급	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약정	KBIZ공동구매 플랫폼 내 거래

○ 참여 협동조합 : 참여희망 조합원사 모집

- 참여신청 공문, 조합 사업자등록증, 참여신청서(별첨 엑셀파일)
중앙회 제출

○ 중소기업중앙회 : 조합추천 업체 보증기관 추천(신보, 기보)

○ 보증기관(신보, 기보) : 추천업체 대상 신용 및 보증한도 심사

-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가부, 보증한도 결정 및 보증발급

*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관) 7월 신규참여

○ 참여기업 :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방문 및 약정 체결

○ 협동조합, 참여기업 : 공동구매 진행

- KBIZ공동구매플랫폼(<http://coopbuy.kbiz.or.kr>) 회원가입 및
공동구매 거래 진행

※ 보증발급 이후 진행절차는 업무수탁 수행기관인 (주)이상네트
웍스에서 조합 및 업체 방문 안내

□ 문의처 및 제출처

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정수연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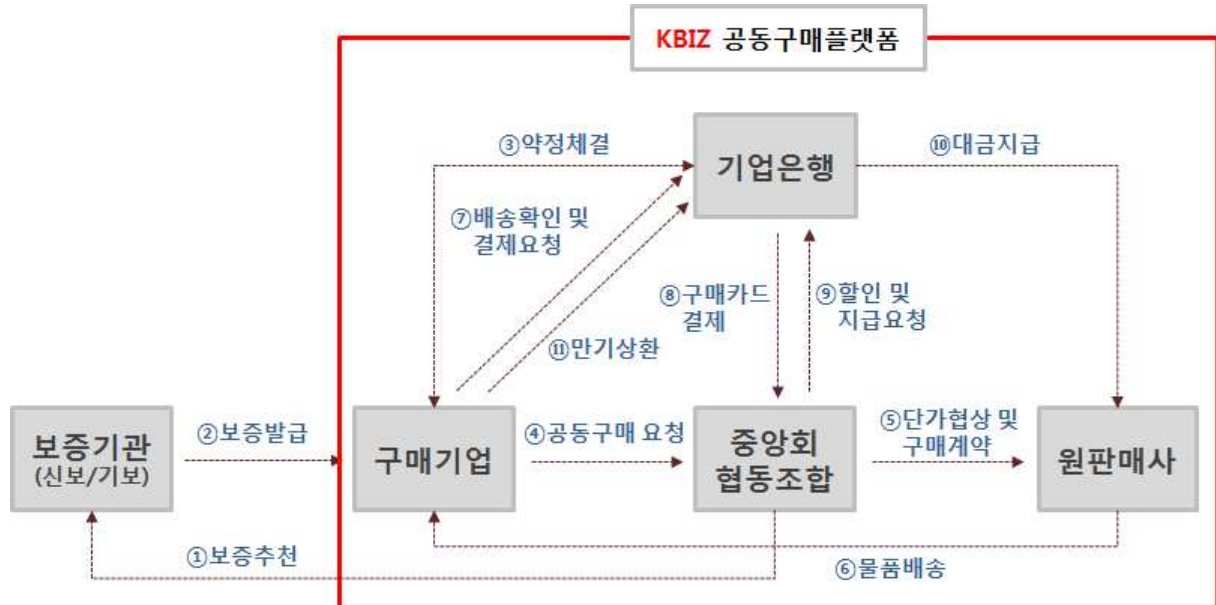
TEL : 02) 2124-3223 FAX : 02) 780-9785

e-mail : youn0202@kbiz.or.kr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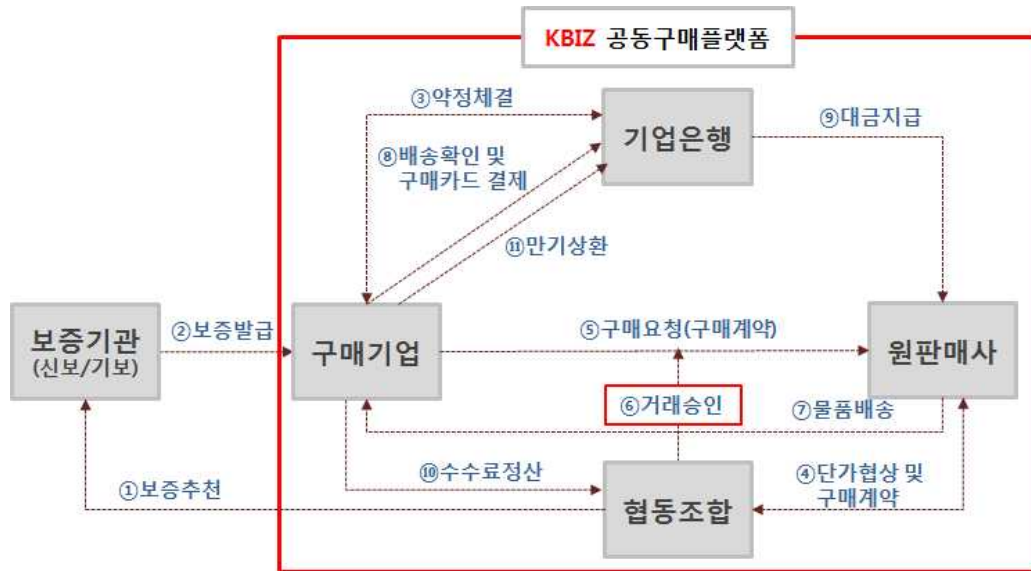
공동구매 및 결제 세부 프로세스

□ 협동조합 거래중개 방식



- ① 보증추천 : 협동조합 → 중앙회 → 보증기관(신보/기보/신보중앙회)
*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관) 7월 신규참여
- ② 보증발급 : 보증기관 → 구매기업
- ③ 약정체결 : 구매기업 ↔ 기업은행 (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)
- ④ 공동구매요청 : 구매기업 → 협동조합
- 품목, 단가, 납기일, 납품처 등 요구사항 전달 등
- ⑤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: 협동조합 → 원판매사
-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
- ⑥ 물품배송 : 원판매사 → 구매기업
- ⑦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: 구매기업 → 기업은행
- 배송품목, 물량, 하자여부 확인 후 기업은행에 협동조합 대금지결제 요청
- ⑧ 구매카드 결제 : 기업은행 → 협동조합
-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지결제(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)
- ⑨ 할인 및 지급요청 : 협동조합 → 기업은행
-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
- ⑩ 대금지급 : 기업은행 → 원판매사
- ⑪ 만기상환 : 구매기업 → 기업은행 (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)

□ 협동조합 거래승인 방식



- ① 보증추천 : 협동조합 → 중앙회 → 보증기관(신보/기보/신보중앙회)
*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관) 7월 신규참여
- ② 보증심사 및 발급 : 보증기관 → 구매기업
- ③ 약정체결 : 구매기업 ↔ 기업은행 (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)
- ④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: 협동조합 → 원판매사
-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
- ⑤ 구매요청 : 구매기업 → 원판매사
- 품목, 단가, 납기일, 납품처 등 요구사항 전달 등
- ⑥ 거래승인 : 협동조합 → 구매기업 및 원판매사
- 협동조합이 승인하는 원판매사와 거래 진행 가능
- ⑦ 물품배송 : 원판매사 → 구매기업
- ⑧ 배송확인 및 구매카드 결제 : 구매기업 → 기업은행
- 배송품목, 물량, 하자여부 확인 후 기업은행에 구매대금 결제 요청
- ⑨ 대금지급 : 기업은행 → 원판매사
-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(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)
- ⑩ 수수료 정산 : 구매기업 → 협동조합
- 공동구매에 따른 수수료 정산
- ⑪ 만기상환 : 구매기업 → 기업은행 (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)